

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
공유재산관리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곽영학

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9년 11월 28일

○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28일

3. 제안이유

- 공장입지가 불리한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괴산 대제산업단지 내 임대 운용 중인 산업시설용지를 기업체에 매각하여 충청도 내 기업의 장기적 투자 및 근로자 정착을 도모하려는 안건으로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.

4. 주요내용

□ 재산의 처분 : 괴산대제산단 내 토지 매각

- 위 치 :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889번지(괴산대제산단 내)
- 사업기간 : 2019. 12. ~ 2020. 2.
- 매각규모 : 13,934.2㎡
- 매각금액 : 1,675백만원 정도(감정평가액)

- 매각방식 : 일반경쟁입찰

5. 검토의견

-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
- 공장입지가 불리한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괴산 대제산업단지 내 임대 운용 중인 산업시설용지를 기업체에 매각하려는 것으로
- 현재 산업시설용지는 2019년 9월 (주)엠티에이에 임대를 하였으며, (주)엠티에이 측의 임대부지 매입 요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매각하려는 것임.
-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및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아 수의매각이 불가하여 일반경쟁방식으로 매각을 하려는 것임.
- 현재 임대 운영중인 산업시설용지를 매각하여 입주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및 근로자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계획이라 판단됨.

붙임: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. 끝.